

에너지환경대학원 (그린스쿨) 학사운영 내규

2010.3.1 제정

2010.9.1 개정

2011.1.1 개정

2012.9.1. 일부개정

2014.3.1. 일부개정

2015.3.1. 일부개정

2016.4.1. 일부개정

2016.9.1. 일부개정

2019.3.1. 일부개정

2019.9.1. 일부개정

2020.3.1. 일부개정

2020.9.1. 일부개정

2022.9.1. 일부개정

<에너지환경대학원 행정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학칙 에너지환경대학원 (그린스쿨) (이하 “본 대학원”이라 함)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공의 구성) 본 대학원의 교육과정은 3개의 세부전공(신재생에너지, 첨단환경과학, 에너지환경정책)으로 구성한다. <조 신설 2016.9.1.>

제3조 (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간 내에서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하는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교과목 및 수업 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 할 수 없다.

② 학기별 학점 취득은 다음과 같다.

하한 취득학점	상한 취득학점	초과 취득학점	연구지도학점
석사 2학기 동안 3학점 박사 3학기 동안 3학점	15학점	3학점	2학점 (매학기 신청)

제4조 (필수 이수과목) ① 석사과정의 학생은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27학점 중에는 ‘에너지와 환경정책(3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에너지공학개론’(3학점)과 ‘환경공학개론’(3학점)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학기간 중 ‘윤강(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② 박사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39학점 중에는 ‘에너지와 환경정책’(3학점), ‘에너지공학개론’(3학점)과 ‘환경공학개론’(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학기간 중 ‘윤강(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③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에는 ‘에너지와 환경정책’(3학점), ‘에너지공학개론’(3학점)과 ‘환경공학개론’(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재학기간 중 ‘윤강(3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

④ 윤강의 경우 각 과정에서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하는 경우 기초공통 또는 전공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3.1.>

⑤ 각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

구분		신재생에너지전공	첨단환경과학전공	에너지환경정책전공
석사	논문 트랙	전주기시물레이션+ 지도교수 선택 1과목	환경정책의 과학기술적이해 + 지도교수 선택 1과목	연구방법론+지도교수 선택 1과목
	교과 트랙	전공 주임교수 선택 1과목		
박사		전주기시물레이션 + 지도교수 선택2과목	환경정책의 과학기술적이해 + 지도교수 선택 2과목	연구방법론 + 지도교수 선택 2과목

<개정 2022.9.1>

⑥ 지도교수 선택 교과목은 입학 후 첫 학기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필수이수과목 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명시한 필수이수과목은 제5항의 각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9.1.>

제4조의 1(특수연구방법론)① 수업은 주당 실습시간 6시간(3학점)으로 구성한다.

② 학연교수가 개설하고, 특수연구방법론 뒤에 해당교수가 정하는 교육 및 연구분야를 기재한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1과목,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2과목까지 이수가능하다.

④ 전공별 필수 이수과목(지도교수 지정과목)에서 제외한다.

⑤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개설한다. (조 신설 2020.9.1.)

제5조 (이수과목 지정 및 면제) ① 신입생은 입학 후 20일 이내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선수과목지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공별로 선수과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험에 합격한 학생은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이수를 면제 할 수 있다.

제6조 (필수 이수과목 면제) 본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학생 중 본 대학원의 필수 이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박사과정 진학 시 해당과목의 이수를 면제한다. 단, 윤강은 제외한다. <개정 2014.3.1.>

제7조 (영어시험) ① 영어시험은 본교 혹은 외부 공인기관이 시행한 영어 시험으로 하며, 성적표(또는 증명서)는 학위청구논문 접수 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

② 외부공인기관 시행 영어시험 합격 점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
TOEIC	720
TOEFL	CBT : 215
	IBT : 75
	PBT : 560
TEPS	600

<개정 2020.3.1>

- ③ 성적은 학위청구논문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을 인정한다. <개정 2012.9.1.>
- ④ 학과주임 교수의 승인을 받아 국제어학원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영어시험 대체강좌를 수강하고 B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는 영어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3.1.>
- ⑤ 외국인은 국제어학원에서 개설한 “대학원 외국어시험 인정을 위한 한국어 강좌(2급 이상 과정)”에서 B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 8조 (종합시험) ①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인 ‘에너지와 환경정책’ 1과목과 ‘에너지공학개론’ 및 ‘환경공학개론’ 중 선택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과목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종합시험은 필수 이수과목인 ‘에너지와 환경정책’ 1과목과 ‘에너지공학개론’ 및 ‘환경공학개론’ 중 선택 1과목을 합격하여야 하며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과목 2과목을 합격하여야 한다.

③ 각 과목별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졸업 학기 학생으로 종합시험 불합격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을 허가한다.<개정 2012.9.1.>

제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공별 추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및 첨단환경과학 전공

가. 석사과정 : SCI 논문에 투고 1편

나. 박사과정 : SCI 논문 2편을 게재 또는 게재 승인

2. 에너지환경정책 전공

가. 석사과정 : 전국규모학술지에 제1저자로서 논문 1편을 투고 이상 또는 SCI(E), SSCI 및 SCOPUS 등재 학술지에 공저자로서 논문 1편을 투고 이상(다만, SCI(E), SSCI, SCOPUS 해외학술지의 경우 학생 공저자는 최대 2명까지에 한해 추가요건으로 인정하고, 2명을 초과한 학생에 대해서도 인정이 필요할 경우 지도교수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토록 한다.) <개정 2020.3.1.>

나. 박사과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2편을 게재 또는 게재승인

다. 석사와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 1학기 전까지 논문제안서를 학과 세미나를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저자의 지위에 관한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전항의 추가요건 충족을 위한 논문은 청구자가 해당 논문의 제1저자(또는 공동 제1저자)이어야 하며, 논문의 저작자 표시에 있어 본 대학원 소속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1.>

제10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시기) 각 과정의 학위청구논문은 전기는 5월 말일, 후기는 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① 각 과정별 심사용 논문(가제본된 것)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3부

2. 박사 5부

② 논문심사를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논문 심사신청서 및 제출승인서

2. 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3. 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

4. 청구논문 외부 심사위원 주소록(해당자)

③ 논문심사를 위한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심사료는 따로 정한다.

제12조 (심사용 논문의 분량) 논문의 분량에는 제한이 없다.

제13조 (심사용 논문의 용지 및 판형) 용지는 백지를 사용하고, 크기는 4·6배판(대략 257×188mm)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 (심사용 논문의 개요 및 번역본 제출) ① 논문개요는 2000자 내·외로 하여 논문 목차 앞에 오게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문개요와 함께 국문개요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완 논문심사) 논문심사위원회는 심사 중 필요에 따라 심사를 중지하고 논문에 대한 수정·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후 보완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16조 (논문심사 위원) ①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고, 원장이 위촉한다.

②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내부교수 3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 2인 이내규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지도교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원장에 대한 보고의무를 갖는다.

⑤ 각 심사위원은 심사에 있어서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17조 (박사학위 논문심사 회수) 박사과정 논문심사는 최소한 2회 이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재심사) 논문심사 결과 수정·보완이 필요하여 불합격된 논문은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 (완제본 논문의 용어) ① 각 학위청구논문은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도교수의 승인으로 국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 각 학위청구논문을 영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 학위청구논문을 국문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완제본 논문의 온라인 등록) 완제본 논문을 제본하여 제출하기 전에 도서관 홈페이지에 학위논문 원문과 논문초록을 등록하고, 저작권동의서를 제출한다.

제21조 (완제본 논문의 제본 및 제출) ① 논문이 심사에 통과되면 대학원에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인쇄·제본하여 소정기일 내에 지정된 부서에 일정 부수를 제출한다.

② 완제본 논문 원본은 심사위원(장)의 검인을 받아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제본하여 본인이 보관한다.

③ 석사학위 논문 중 3부는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나머지는 백색 또는 회색의 부드러운 표지로 한다.

④ 박사학위 논문은 전부 흑색의 딱딱한 표지로 하고, 금박 인쇄로 한다.

제22조 (완제본 논문의 판형 및 지질) 완제본 논문의 규격은 4·6배판으로 하며, 지질은 모조지 80파운드로 한다.

제23조 (완제본 논문의 장정 및 양식 차례) 완제본 논문의 표지, 내지 등의 장정(裝幀), 성양식, 차례 등은 일반대학원 논문양식을 에 따른다.

제24조 (완제본 논문 활자) ① 논문제목의 활자의 크기는 활자수가 10자 이내일 경우에는 30포인트(pt.), 1행 이내일 경우에는 28포인트, 2행 이상일 경우에는 21포인트로 한다.

② 학교명칭(高麗大學校·韓國科學技術研究院 에너지環境大學院. Green School, Korea Univ.·KIST)의 활자는 논문제목의 활자 크기가 28포인트 이상일 경우에는 20포인트, 21포인트의 경우에는 18포인트 크기로 한다.

③ 년 월 일과 인(印)은 14포인트로 한다.

④ 기타 부분은 전부 16포인트로 한다(학과, 성명, 지도교수, 석사학위논문, ……제출함, ……완료 함 등).

⑤ 활자의 위치는 표시된 대로 하되 위치표시가 없는 것은 좌우 중앙에 놓이게 한다.

제24조의1 (연구비 지원) 이 대학원 시행세칙 제4조제4항의 연구비 지원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참여율 50% 이상으로 연구 참여
2. 한 학기 이상 연구비 지원 <조 신설 2020.3.1.>

제24조2 (수료연구생의 졸업요건에 관한 특례) 이 개정 내규 시행 이전에 수료한 석사과정 수료연구생 중 이 대학원으로부터 제24조의1에 의한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학생이 교과 트랙을 선택하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2월 졸업까지에 한하여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6학점은 대학원 학과세미나에서의 포스터 또는 구두 발표로 대체한다. <조 신설 2020.3.1.>

제25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제4조 (필수 이수과목)은 201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 (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은 2013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제4항 및 제6조 개정)

부칙

1. 이 개정 내규는 2015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7조 제4항의 개정은 2015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9조 개정)
2. 제 9조 제1항 2호 에너지환경정책 전공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추가요건에 관한 개정은 2016년 8월 졸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 2조 신설)
2. (제3조 내지 제25조 조 번호 변경)

부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①항 내지 ④항 변경, ⑤항 내지 ⑥항 신설)
2. (적용대상) 제4조 개정사항은 2019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9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대학원명칭변경)
2. (대학원 명칭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 1조의 개정사항은 2019학년도 2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①항 및 ⑤항 개정, 제7조 ②항 개정, 제9조 ①항 제2호 및 ②항 개정, 제24조의1, 제24조의 2 신설)
2. (경과규정)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3월 이전 재적생과 수료연구생에도 적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의1 신설)

부 칙

이 내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 개정)